경기도 고시 제2023-64호

김포 통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

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에 따라 김포 통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9. 21.
경 기 도 지 사

1. 산업단지 개요

가.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

- 관리기관 : 김포시
- 산업단지 위치 :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335번지 일원

나. 지정목적

-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소득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도모

다. 추진경위

- ’07. 11. 5. :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고시(경기도 고시 제2007-376호)
- ’09. 3. 12. :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(경기도 고시 제2009-93호)
- ’10. 5. 12. : 개발계획 변경 고시(경기도 고시 제2010-161호)
- ‘11. 1. 4. :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(경기도 고시 제2010-455호)
- ’12. 6. 14. : 계획 변경 고시(경기도 고시 제2012-160호)
- ’12. 9. 28. : 준공인가 공고(경기도 고시 제2012-923호)
- ’21. 4. 9.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(경기도 고시 제2021-5080호)
- ’21. 12. 31. : 산업단지계획(변경) 승인 고시(경기도 고시 제2021-5244호)

라. 분양현황

구 분	분양대상(㎡)	분양현황(㎡)			조성기간	사업시행자
		합 계	분 양	미분양		
계	29,376.4	29,376.4	29,376.4	-	-	
산업시설구역	29,376.4	29,376.4	29,376.4	-	'07.11.~ '12.06.	㈜삼성케미칼

마. 입주현황

구 분	입주업체수		면 적(㎡)	
	합계	제조업	합계	제조업
계	1	1	29,376.4	29,376.4
2023년 6월 현재	1	1	29,376.4	29,376.4
향후계획	-	-	-	-

바. 입지여건

시 설 명	총 계 획	개발기간	시행기관
용 수	• 공업용수: 3㎥/일 • 생활용수: 39㎥/일	'07.11 ~'12.06	사업시행자
폐기물처리	• 폐기물량 : 1.12톤/일 • 매립, 소각 및 위탁처리	〃	사업시행자
오·폐수처리	• 오수량 : 34㎥/일 • 폐수량 : 1.4㎥/일	〃	사업시행자
전 력	• 계획전력량 : 11,067Mwh/년	〃	한국전력공사
통 신	• 회선수요량 : 51회선	〃	㈜KT

2.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
가. 기본방향

○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8조, 제39조 근거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

○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, 지원시설구역,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함

나.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

1) 용도별 구역 면적

총 면 적(㎡)	산업시설구역(㎡)	지원시설구역(㎡)	녹지구역(㎡)
33,970.8	29,376.4	415.0	4,179.4
(100.0%)	(86.5%)	(1.2%)	(12.3%)

2)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

가) 산업시설구역

위 치	구 분		계 획 내 용
산업시설용지	용도	허용	○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○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
		불허	○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폐율		○70% 이하
	용적률		○350% 이하

나) 지원시설구역(주차장)

○ 주차전용 건축물일 경우 「주차장법」에 따름

○ 노외주차장일 경우 부대시설로서 휴게소, 간이매점,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, 주차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조의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가능함

다) 녹지구역

○ 녹지구역 유지관리 및 이용자 편의에 필요한 공공시설
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가능함(단, 건물 및 주차장 옥외부분)

3) 용도별 구획 평면도 : 별표# 1

다. 업종별 배치계획

1) 업종별 배치현황

구 분	면적(㎡)	업체수
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외) (C13)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(C17)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(C22)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(C25)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(C29)	29,376.4	1

2) 업종별 배치기준

○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블록화 및 관련업종 계열화 배치

○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배치

○ 위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상 등 현실적인 여건 또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

3) 업종별 배치계획도 : 별표# 3

라. 입주관리계획

1) 입주대상업종

중분류코드	업 종 명	비 고
13	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외)	
17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
22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
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제외)	
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

※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태양력발전업(D35114) 입주 가능함

【입주제한 업종】

- 공업용수 다소비 및 입주 부적격 업종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1종사업장 내지 2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(다만, 생산공정중 화석연료(액체 및

고체)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)
- 「물환경보전법」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(다만,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 제외)
- 「물환경보전법」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3의 1종사업장 내지 2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

2) 입주자격
○ 산업시설구역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

○ 지원시설구역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

○ 녹지구역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(단, 건물 및 주차장 옥외부분)

3) 입주 우선 순위
○ 김포시 관내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
○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로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기업
○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
○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으로 김포시장의 추천이 있는 기업
○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
○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
※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2조의3 ④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(분양공고 전)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음
※ 동일 순위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.
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③항)

4) 입주절차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 체결

5) 주차시설
○ 기계식 주차장 불허

마. 사후관리계획
1) 산업용지 관리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,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하여야 함

2) 환경관리
○ 입주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, 대기오염, 소음·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함
○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·폐수의 자체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, 폐기물은 외부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토록함

3) 안전관리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의거

관리기관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
○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재해복구 협조 체제 구축
○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

바.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
1) 공장설립 지원
○ 공장설립 업무 인·허가 절차 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
○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

2) 생산활동 지원
○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
○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
○ 기술개발 및 수출, 무역, 박람회 등 산업정보 제공
○ 구인·구직의 날 운영 등 산업인력 수급 지원
○ 각종 지원시책 추진시 우대

3) 고용증대 및 근로자 교육 지원
○ 산업인력공단,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 실시

4)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
○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
○ 생산시설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제공
○ 입주기업체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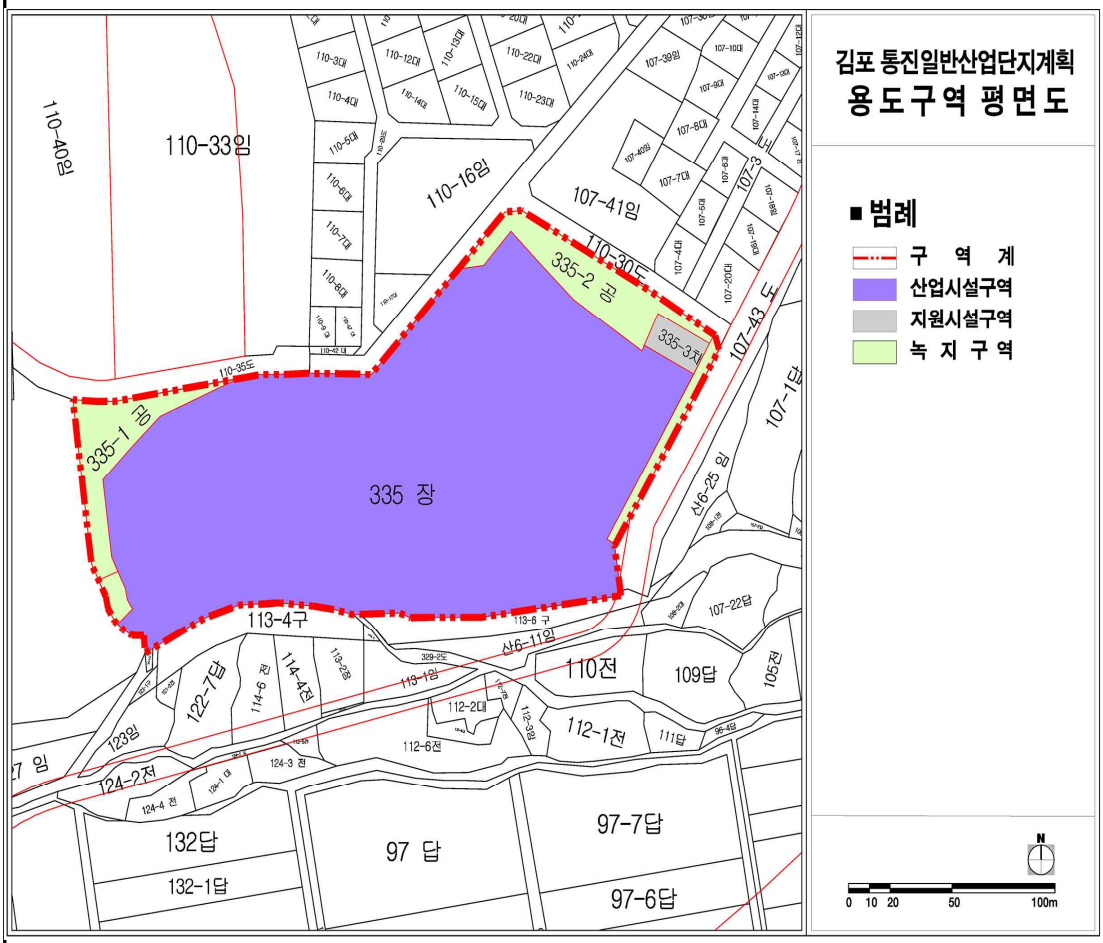
사.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
1) 중소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
2)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
3) 분양용지의 불법전매·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

※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및 김포시 조례에 따름

경 기 도 보

제7343호 2023. 9. 21. (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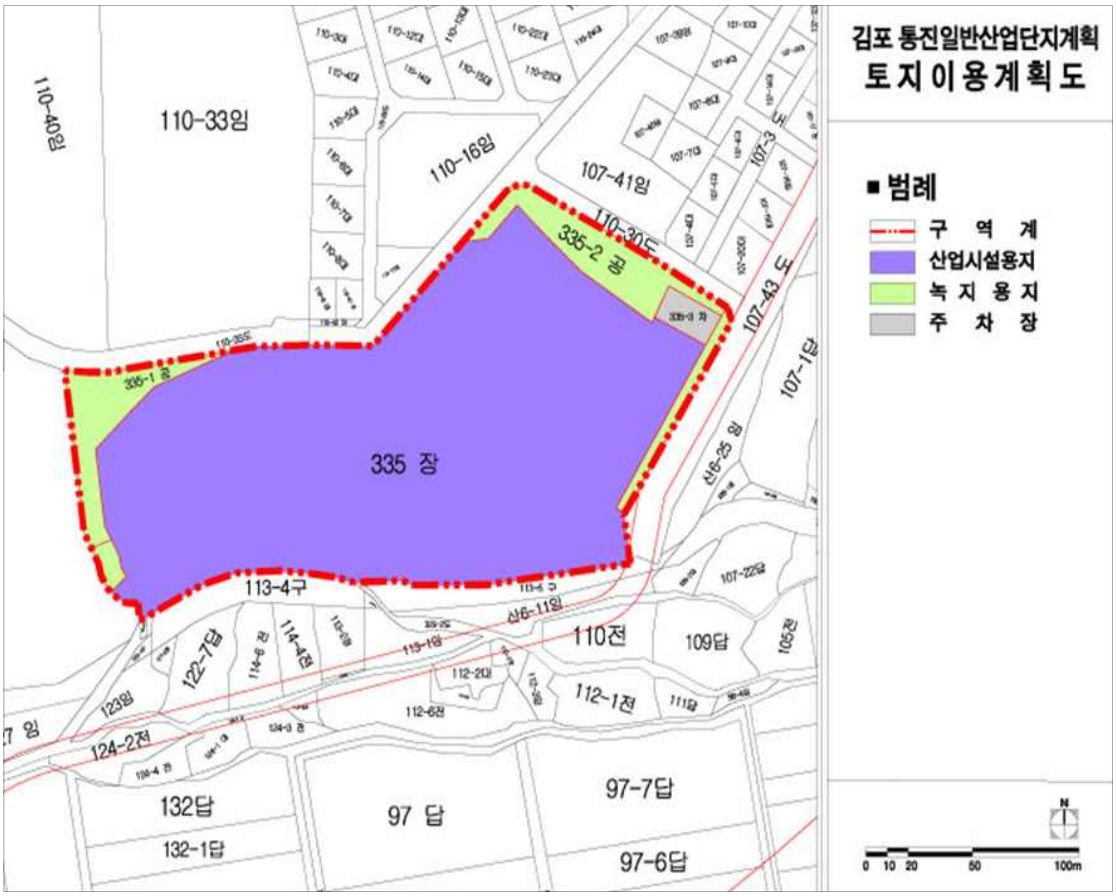
[별표# 1] 용도별 구획 평면도



구 분	면 적(㎡)	구성비(%)	시설명	비고
합 계	33,970.8	100.0		
산업시설구역	29,376.4	86.5	산업시설용지	
지원시설구역	415.0	1.2	주차장	
녹 지 구 역	4,179.4	12.3	녹지용지	

경 기 도 보

[별표# 2] 토지이용계획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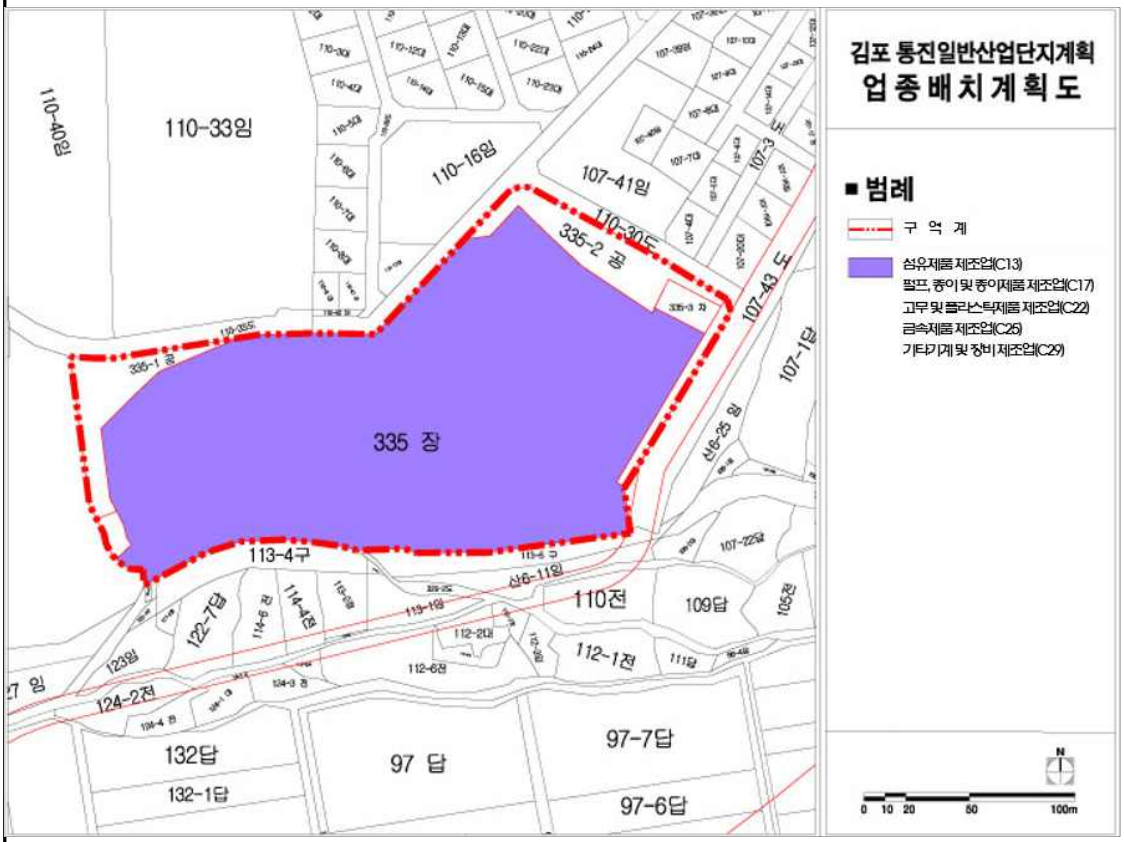


구 분	면 적(㎡)	구성비(%)	용도구역별	비고
합 계	33,970.8	100.0		
산업시설용지	29,376.4	86.5	산업시설구역	
공공시설용지	4,594.4	13.5	-	
주차장	415.0	1.2	지원시설구역	
녹 지	4,179.4	12.3	녹지구역	

경 기 도 보

제7343호 2023. 9. 21. (목)

[별표# 3] 업종별 배치계획도



구 분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고
13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외) 17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9.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	29,376.4	100.0	